

#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▶ [시행 2015.12.1.] [법률 제13526호, 2015.12.1., 일부개정]

## 제정 · 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### 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, 무허가·미신고 축사에서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배출시설의 종류별로 2018년 3월 24일 또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며,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한편, 그 밖에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해소 후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등 그 동안 법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·정비하려는 것임.

〈법제처 제공〉

## 제정 · 개정문

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박근혜 (인)

2015년 12월 1일

국무총리 황교안

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

### ◎ 법률 제13526호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"가축분뇨 고체연료"란 가축분뇨를 분리·건조·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

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** 중 “설치하려는 자”를 각각 “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·운영 중인 자”로 한다.

**제13조의2의 제목** “(퇴비액비화기준)”을 “(퇴비액비화기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자원화시설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(이하 “고체연료기준”이라 한다)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15조제4항 전단** 중 “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정화하고,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공정규격에 맞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할”을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처리할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
2.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「비료관리법」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
3.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

**제15조제5항 및 제6항** 중 “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”을 각각 “제4항 각 호의 기준”

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수질 또는 퇴비·액비”를 “수질, 퇴비·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”로 한다.

**제15조의2**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5조의2(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)**

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
3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
  - 가.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
  - 나.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

②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.

**제17조제1항제6호** 중 “버리는 행위”를 “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”로 한다.

**제18조의3제2항** 중 “수질 또는 퇴비·액비의”를 각각 “수질, 퇴비·액비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”을 “방류수수질기준, 퇴비액비화기준,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방류수의 수질 또는 퇴비·액비”를 “방류수의 수질, 퇴비·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”로 한다.

료”로 한다.

**제25조제9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**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행위

**제31조제4호** 중 “제32조”를 “제32조(같은 조 제2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**제41조제2항** 중 “퇴비액비화기준 또는 공정규격 의”를 “퇴비액비화기준,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”로, “수질 또는 퇴비·액비 의”를 “수질, 퇴비·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”로 한다.

**제48조제4호** 중 “제3호부터 제6호까지”를 “제4호부터 제7호까지”로 한다.

**제50조제5호** 중 “신고를 한 자로서”를 “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·액비를 살포한 자로서”로 한다.

**제51조제2호** 중 “신고를 한 자 또는 재활용신고자”를 “신고를 한 자, 재활용신고자 또는 퇴비·액비를 살포한 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나. 퇴비·액비를 살포하는 자

**제53조제2항제2호**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“퇴비·액비”를 “퇴비·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”로 한다.

2.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,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
3.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**법률 제12516호**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, 같은 법률 부칙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)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는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: 2019년 3월 24일
2. 제1호 외의 배출시설 : 2018년 3월 24일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4호의2, 제8조제1항, 제13조의2제2항, 제1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, 제15조의2, 제17조제1항제6호, 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25조제9항제3호, 제41조제2항, 제53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허가 및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)** 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016년 3월 24일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, 이 법 시행 후 2017년 3월 24일까지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, 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**제3조(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**제4조(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**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**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